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이사회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138명(7급 9명, 8급 52명, 9급 7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 7급 52명, 8급 77명)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명(8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조사국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3의3.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제6조제3항에 제9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5호까지의 규정과”를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9의2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9의2. 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지도 및 조정(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제7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제5항 중 “제12조제16항제2호, 제3호”를 “제12조제16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사무관 “43”을 “46”으로, 관세주사 “83”을 “80”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사무관 “44”를 “47”로, 관세주사 “98”을 “95”로 한다.

별표 6 중 관세서기 “1”을 “2”로, 관세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6의2 중 관세서기 “1”을 “2”로, 관세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관세주사보 “16”을 “17”로, 관세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관세주사보 “16”을 “17”로, 관세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79”를 각각 “4,867”로, 관세주사 “760”을 “777”로, 공업주사 “19”를 “20”으로, 식품위생주사 “2”를 “3”으로, 관세주사보 “873”을 “927”로, 전산주사보 “6”을 “7”로, 공업주사보 “54”를 “58”로, 방송통신주사보 “11”을 “12”로, 해양수산주사보 “59”를 “62”로, 관세서기 “1,002”를 “1,053”으로, 전산서기 “6”을 “5”로, 공업서기 “25”를 “24”로 한다.

별표 8 중 해양수산서기 “97”을 “98”로, 관세서기보 “800”을 “741”로, 공업서기보 “7”을 “6”으로, 방송통신서기보 “22”를 “21”로, 해양수산서기보 “78”을 “74”로, 기록연구사 “5”를 “6”으로,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21”을 “22”로,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4”를 “175”로,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49”를 “167”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86”을 각각 “4,874”로, 관세주사 “841”을 “858”로, 공업주사 “21”을 “22”로, 식품위생주사 “2”를 “3”으로, 관세주사보 “967”을 “1,025”로, 전산주사보 “7”을 “8”로, 공업주사보 “59”를 “63”으로, 방송통신주사보 “12”를 “13”으로, 해양수산주사보 “65”를 “68”로, 관세서기 “908”을 “955”로, 전산서기 “2”를 “1”로, 공업서기 “18”을

“17”로 한다.

별표 8의2 중 해양수산서기 “89”를 “90”으로, 관세서기보 “710”을 “651”로, 공업서기보 “6”을 “5”로, 방송통신서기보 “21”을 “20”으로, 해양수산서기보 “74”를 “70”으로, 기록연구사 “5”를 “6”으로,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21”을 “22”로,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4”를 “175”로,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49”를 “167”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	-----------------

기획재정부령 제91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주사보 4명)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서기 4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 ⑥ (생략) ⑦ 납세자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생략)	제3조(기획조정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u> <u>3의3.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u> 4.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국) ①·② (생략)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조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u>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 <u>9의2. 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관</u>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43</u>	<u>46</u>	+3
•	•	•	
•	•	•	
관세주사	<u>83</u>	<u>80</u>	-3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44</u>	<u>47</u>	+3
•	•	•	
•	•	•	
관세주사	<u>98</u>	<u>95</u>	-3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서기			<u>1</u>		<u>2</u>	+1
	.		.		.	
관세서기보			<u>2</u>		<u>1</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서기			<u>1</u>		<u>2</u>	+1
	.		.		.	
관세서기보			<u>2</u>		<u>1</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주사보			<u>16</u>		<u>17</u>	+1
	•		•		•	
	•		•		•	
관세서기보			<u>7</u>		<u>6</u>	-1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주사보			<u>16</u>		<u>17</u>	+1
	•		•		•	
	•		•		•	
관세서기보			<u>7</u>		<u>6</u>	-1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79	4,867	+88
일반직 계	4,779	4,867	+88
관세주사	760	777	+17
공업주사	19	20	+1
식품위생주사	2	3	+1
관세주사보	873	927	+54
전산주사보	6	7	+1
공업주사보	54	58	+4

방송통신주사보	11	12	+1
해양수산주사보	59	62	+3
관세서기	1,002	1,053	+51
전산서기	6	5	-1
공업서기	25	24	-1
해양수산서기	97	98	+1
관세서기보	800	741	-59
공업서기보	7	6	-1
방송통신서기보	22	21	-1
해양수산서기보	78	74	-4

기록연구사	<u>5</u>	<u>6</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u>21</u>	<u>22</u>	+1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74</u>	<u>175</u>	+1
·	·	·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49</u>	<u>167</u>	+18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786</u>	<u>4,874</u>	+88
일반직 계	<u>4,786</u>	<u>4,874</u>	+88
·	·	·	
·	·	·	
관세주사	<u>841</u>	<u>858</u>	+17
·	·	·	
·	·	·	
공업주사	<u>21</u>	<u>22</u>	+1
·	·	·	
·	·	·	
식품위생주사	<u>2</u>	<u>3</u>	+1
·	·	·	
·	·	·	
관세주사보	<u>967</u>	<u>1,025</u>	+58
·	·	·	
·	·	·	
전산주사보	<u>7</u>	<u>8</u>	+1
공업주사보	<u>59</u>	<u>63</u>	+4

방송통신주사보	<u>12</u>	<u>13</u>	+1
해양수산주사보	<u>65</u>	<u>68</u>	+3
.	.	.	
.	.	.	
관세서기	<u>908</u>	<u>955</u>	+47
.	.	.	
.	.	.	
전산서기	<u>2</u>	<u>1</u>	-1
공업서기	<u>18</u>	<u>17</u>	-1
.	.	.	
해양수산서기	<u>89</u>	<u>90</u>	+1
.	.	.	
.	.	.	
관세서기보	<u>710</u>	<u>651</u>	-59
.	.	.	
.	.	.	
공업서기보	<u>6</u>	<u>5</u>	-1
방송통신서기보	<u>21</u>	<u>20</u>	-1
해양수산서기보	<u>74</u>	<u>70</u>	-4
.	.	.	
.	.	.	

기록연구사	<u>5</u>	<u>6</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u>21</u>	<u>22</u>	+1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74</u>	<u>175</u>	+1
.	.	.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49</u>	<u>167</u>	+18